

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('22.7.1.~7.31.) 운영

□ 실업급여, 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제도의 건전한 운영 및 사회적 인식제고,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22. 7. 1.~2022. 7. 31. 까지 「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」을 운영합니다.

○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액이 면제되며, 형사처벌 선처(검사 지휘 받아 내사 종결)가 가능*합니다.

-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 추가징수 100%(공모형 300~500%)
-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추가징수 200%~500%

* 다만, 공모형 부정수급,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및 처벌받은 경우, 부정수급액 미반환, 고의성 등 검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선처 불가

* 자진신고만 하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자진신고로 처리 불가

○ 이번 신고기간 중 자진신고하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 자진신고 전담창구*로 문의하시면 됩니다.

* 서울동부고용지청 고용관리과 부정수급조사팀

(문의) ☎ 02-2142-8465, 팩스 02-6915-4051

(주소) 서울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11층

* 온라인 고용보험(www.ei.go.kr) 부정행위 on-Line 신고센터 접수 가능

▷ 접수 관서 :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 수급지 관할 지청, 고용장려금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청,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지청

□ 부정수급 신고포상 제도 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7조)

사업 구분	포상기준	연간 상한액(1명당)	하한액
실업급여	부정수급액의 20%	500만원 (사업주 공모 시 5,000만원)	1만원
모성보호급여 *육아휴직급여, 출산전후휴가급여 등	부정수급액의 20%	500만원	
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사업	부정수급액의 30%	3,000만원	

*지급제한 규정(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제2항)

①부정행위자가 신고한 경우 ②언론매체에 의해 이미 공개되어 조사 및 수사중인 경우 ③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④신고내용이 충분치 않아 확인이 어려운 경우 ⑤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 할수 없는 경우 ⑥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

▶ **실업급여** ◀

- ❖ 'ㄱ' 수급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'A'사에 취업하였음에도 이를 숨기고 실업급여 부정수급
- ❖ 'ㄴ' 수급자의 'B'사에서의 실제 퇴사사유는 "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"임에도 '권고사직'으로 피보험자격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
- ❖ 'ㄷ' 수급자는 'C'사에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'C'사 대표와 공모하여 피보험자격 허위신고 후 실업급여 부정수급(위장퇴사)
- ❖ 'ㄹ' 수급자는 'D'사에서 실제 근로하지 않았음에도 근로하였다고 'D'사 대표와 공모하여 피보험자격 허위신고 후 실업급여 부정수급(위장고용)

▶ **고용장려금 등 고용안정사업** ◀

- ❖ 'ㄱ' 회사는 고용유지조치(휴업, 휴직) 기간 중 근로자 출근 명령 후 고용장려금을 수령
- ❖ 'ㄴ' 회사는 휴업수당 과다 지급 후 일부를 근로자로부터 현금으로 반환(페이백)
- ❖ 'ㄷ' 회사는 근무사실이 없는 자를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고용장려금을 수령
- ❖ 'ㄹ' 회사는 정규직 채용하여 장려금을 지급 받은 후 해당 근로자를 계약만으로 피보험자 상실신고
- ❖ 'ㅁ' 회사는 사업주(법인 대표자)의 배우자 및 직계 존·비속을 채용하여 지원금 수령
- ❖ 'ㅂ' 회사는 이미 근로를 제공(사전근로)하고 있던 자를 신규채용한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 후 장려금 수령

▶ **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** ◀

- ❖ 'ㄱ' 수급자는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중 'A'사에서 퇴사하였음에도 계속 근무 중인 것으로 숨기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
- ❖ 'ㄴ' 수급자는 'B'사에서 육아휴직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'B'사 대표와 공모하여 육아휴직하였다고 허위 신고 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
- ❖ 'ㄷ' 수급자는 'C'사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'C'사 대표와 공모하여 현재 근무 중이며 육아휴직급여 대상자라고 허위신고 후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

▶ **직업능력개발사업** ◀

- ❖ 'ㄱ' 훈련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허위 계좌 발급받아 훈련장려금 부정수급
- ❖ 'A' 사업주(혹은 훈련기관)은 훈련비용을 많이 지원받기 위해 실제 훈련 미실시 훈련생을 허위 등록하여 훈련비 부정수급
- ❖ 'B' 사업주(혹은 훈련기관)은 인정이 불가능한 훈련과정을 서류 조작 등을 통해 과정 인정받아 훈련비 부정수급
- ❖ 'C' 사업주(혹은 훈련기관)은 출석률을 조작하여 수료 기준 미달자를 수료한 것처럼 허위 보고 후 훈련비 부정수급